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10. 24 선고 2018가단198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9. 5

판결 선고 2018. 10. 2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C 대 482㎡를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6. 3. 21. 충청남도 서천군 C 대 482㎡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가 1990. 9.15.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항변

위 토지의 전 소유자 D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,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.

나. 판단

피고가 주장하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(위 토지의 사용대차 약정)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위 합의상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,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안희길

별지